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나83439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나834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19가단529374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박일섭

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강혁

변론종결 2023. 1. 12.

판결선고 2023. 2. 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19가단529374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5.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40,476,23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5면 아래에서 7행부터 6면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에서 든 증거와 갑 제14호증, 을나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증인 M의 증언에 의한 사실관계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채무 상태를 알기 어려워 B이 사해행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 대하여 선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C은 T이라는 상호로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신제품(차량용 모니터) 생산 계획을 소개하면서 생산 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그 계획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8. 5. 17.경 B의 연대보증 하에 C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8. 11. 17., 이자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C과 B으로부터 위 1.나.(4)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위 대여계약의 특약으로 N으로부터 제품 생산을 발주받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8. 6. 29.경부터 피고에게 N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금형을 제공하면서 임가공을 발주하였고, 이러한 거래는 2019. 9.경까지 계속되었다.

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5억 8,900만 원 정도이고, E의 선순위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4억 3,200만 원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 피고의 채권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위 선순위근저당권 외에는 다른 담보물권이나 가압류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2018. 12.경에서야 세무서, 금융기관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기 시작하였으며, B이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한 것도 2019. 1.경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음으로써 B의 채권자들의 채권을 공동담보할 순재산에 부족함이 초래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기 어려웠다.

③ C은 위 대여금 1억 원의 이자로 피고에게 2018. 6. 18., 2018. 7. 18., 2018. 8. 20. 각 100만 원씩 지급하였고, 그 후 몇 개월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다시 2019. 2. 18. 100만 원, 2019. 3. 15. 300만 원(3개월분), 2019. 4. 17.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에도 해당 월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연체된 이자를 몇 개월분씩 합하여 지급하였다.

④ 피고는 2018. 10. 4. 추가로 B의 연대보증 하에 C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9. 1. 4., 이자 월 15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에 따라 C은 위 2018. 5. 17.자 대여금 1억 원의 이자와 별도로 월 1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이처럼 C이 기존 대여금의 이자를 비교적 꾸준히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B의 연대보증을 받아 C에게 추가로 돈을 대여한 사실도 피고가 당시 B의 재산 상황을 알지 못하였던 점을 뒷받침할 근거에 해당한다.

⑤ 피고와 C, B 사이에 친인척 관계 등 특수한 인적 관계가 있다는 사정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과거에 C과 오랫동안 거래관계가 없었으면서도 그의 사업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1억 원을 대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가 C으로부터 발주받은 물량도 많지 않아 C이 중요한 거래처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C, B과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C, B과 사해행위를 모의하거나 그에 가담할 만한 밀접한 인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정인, 판사 김창형, 판사 당우증

별지